

소방시설공사 착공(변경)신고서

*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특정소방 대상물	상호(명칭)	용도 구분
	소재지	(전화번호:)
	구조 지하 층, 지상 층, 개동	
	대지면적 m ² , 연면적 m ² , 바닥면적 m ² , 건축면적 m ²	
	전체 소방시설	

관계인	성명(기관 또는 법인명)	(서명 또는 인)		
	주소	(전화번호:)		
	도급금액	도급형태	분리도급 []	분리도급 예외 []
	지급보증	계약이행미보증 []	공사대금지급보증 []	공사대금지급보증 예외 []

소방시설 공사업자	상호(명칭)	등록번호	대표자				
	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
	도급구분	원도급 []	하도급 []	착공일	완공예정일		
	공사종류	신설 []	증설 []	개설 []	이전 []	정비 []	그 밖의 공사 []
	시공 소방시설						

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	성명	수첩번호	분야/등급
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	-------

변경내용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시공자[]	상호		
	등록번호		
	대표자		
	소재지	(전화번호:)	(전화번호:)
	정산금액	원	도급금액 원
설치되는 소방시설[]	종류		
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[]	성명	(수첩번호:)	(수첩번호:)
	분야/등급		
	배치기간	~	~

「소방시설공사사업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(변경) 내용을 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소방본부장/소방서장 귀하

작성방법

시공자 변경사항 신고 시 '정산금액'은 변경 전 시공자가 관계인에 대하여 정산받은 금액을 기재하고, '도급금액'은 변경 후 시공자가 받을 금액에 대하여 기재합니다.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.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.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. 설계도서(설계설명서를 포함합니다) 1부. 다만,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5.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.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)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<p>※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.</p>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분기준

공사업자는 착공신고 및 착공변경신고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9조제12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처리절차

